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가단500372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5. 8. 20.

판결 선고2015. 9. 1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2,975,286원 및 그 중 22,597,316원에 대하여 2015. 1. 6.부터 2015. 2. 14.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7. 체결된 매매계약을 22,975,28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2,975,2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는바, 위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A은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위약금, 대지급금 합계 22,975,286원(= 22,597,316원 + 44,380원 + 333,5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2,597,31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2. 14.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2014. 4. 7.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4. 5. 29. 접수 제3352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별지 구상금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A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에 대하여 2014. 7. 3.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냈다.

(2) 피고 A은 2014. 4. 7.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 A은 2014. 4. 7. 당시 및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1. 11. 25.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피고 A은 2014. 7. 3. 이자연체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미 성립의 기초가 발생하여 있었고,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성립한 것으로서, 위 구상금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법리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A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7.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인 2008. 5. 6. 근저당권자 서창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14. 5. 26. 위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따라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시가는 13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권최고액은 26,4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03,600,000원(= 130,000,000원 - 26,400,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액이 위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22,975,2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2014. 4. 7.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위 매매계약을 22,975,28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22,975,28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정운

별지